#### 2025년 9월 9일

발달장애서비스국 중요 공지 사항:

# 운송 중개 서비스에 대한 개정 청구 지침

#### **D-2025 Rate Reform-009**

# 주요 안내 사항

본 지침은 운송 중개 서비스(서비스 코드 883)의 요율 개편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# 변경 사항

본 지침으로 인해 개인 또는 가족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. 본 지침은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 센터를 위한 요율 개편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.

본 지침은 이 서비스 코드의 설명, 청구 구성 요소, 책임에 더 잘 부합하도록 요율을 조정합니다. 이 업데이트된 요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모든 비용의 (소급) 정산에 사용됩니다.

모든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기관(883)과 지역 센터는 2025년 11월 1일까지 향후 모든 청구에 신규 요율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.

### 질문이 있으신가요?

서비스 제공기관은 본 지침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담당 지역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자세히 알아보기

DDS의 요율 개편 웹페이지 (<a href="https://www.dds.ca.gov/rc/vendor-provider/rate-reform">https://www.dds.ca.gov/rc/vendor-provider/rate-reform</a>) 를 방문해 주십시오.

https://lp.constantcontactpages.com/sl/4uWL9xD/RateReform. 에서 요율 개편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신청하십시오.

